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174

발의연월일: 2022. 9. 1.

발 의 자: 김수흥ㆍ기동민ㆍ김교흥

김민석 · 김성환 · 김주영

맹성규 · 안규백 · 이명수

정일영 · 최인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(이하각각 "전기버스" 및 "수소버스"라 함)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운송회사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전기 버스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시내·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9호의2, 제9호의3"을 "제9호의3"으로, "적용하며"를 "적용하며, 제9호의2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"로, "적용하고, 제8호"를 "적용하며, 제8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	개 정 안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	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	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	
호의2, 제5호, <u>제9호의2, 제9호</u>	<u>제9호의3</u>
<u>의3</u> 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	
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	
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	
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	
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<u>적용</u>	<u>적용하며, 제9</u>
<u>하며,</u>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	호의2는 2027년 12월 31일까지
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
체결된 것에만 <u>적용하고, 제8호</u>	
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	<u>적용하며,</u>
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<u>제8호</u>
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